

새롭게 개정된 「환경교육등촉진법」에서는 환경교육 등 지원법인 지정과 체험활동 장을 인정하는 제도와 학교 교육에 있어서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지원 등이 새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 환경교육추진법 개정과 학교 환경교육에 미치는 영향

원종빈 | 동경여학한대학교 강사

동경농공대학교 석·박사학위 수료(농학박사)
현)동경여학한대학교, 아키쿠사학원대학 강사, 한중일환경교육협력회 코디네이터
tel. +81-90-6103-8182 | ya_jongbin@hanmail.net

일본 환경교육추진법이 2003년에 제정된 이후에 국내 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과 협약 등 많은 움직임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2005년에 교토의정서의 발효, 유엔 DESD 시작, 2010 생물다양성 조약, 2011년의 유엔 기후변화 조약 등이 개최되었고 여기에 따른 국가전략과 기본 계획 등이 제정되었다. 또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지방의 대지진과 츠나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나와 이웃간의 관계, 나와 지역간의 관계, 지역과 지역과의 관계 등, 연결고리에 대한 「협력관계」가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2003년에 제정된 환경교육추진법 개정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작년 6월에 일본 국회에서 심의된 환경교육추진법 일부가 개정 절차를 밟고, 2012년 10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된 환경교육 관련법은 법률명칭 도 「환경교육 등의 환경보전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환경교육등촉진법」)으로 바뀌었다.



환경교육추진법의 개정 경위

일본의 환경교육 관련법은 2003년 7월에 「환경 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 환경교육추진법)」이 성립되었고, 그 1년 후에는 기본방침이 제정 되었다. 전환경교육추진법의 개정된 배경에는, 구법률 마지막 부분 부칙 2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 부칙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2003년에 제정된 환경교육추진법이 시행된 이후 5년이 지난 2008년부터 환경교육추진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준비시점에서 한국의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고 법률 개정에 대한 자극이 되기도 하였다. 법이 개정된 과정에는, 처음 개정안이 제출된 시기는 2009년 7월이고 당시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민당에 의해 제171회 정기국회에 제출 하였지만, 이후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그후 정권교체로 인하여 지금의 민주당이 제177회 통상국회에 중의원 의원인 환경위원장이 2011년 5월 27일에 제출 하였다. 제출된 법률 명칭은,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 증진 및 환경 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으로서 2003년 만들어진 환경교육추진법의 정식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중의원에서 심의되었고, 환경위원장이 개정안의 초안의 취지와 내용 설명을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세가지 부분이 강조되었는데,

첫째는 「각 주체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의 목적 등에 협력 사업의 추진을 명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조치로서, 국민, 민간단체 등에 의한 환경교육 등에 관한 정책형성에 대한 참여와 정책 제언,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기회의 증대에 대한 배려, 각 주체의 역할분담, 협정체결을 촉진하는 구조와 정비 등을 도모하고.」

둘째는 「학교교육 등에 있어서 환경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정비 등 환경 배려에 대한 촉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교직원의 연수

내용을 충실, 참고가 되는 자료 등의 정보제공, 교재개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셋째는 「환경보전 활동, 환경보전의 의욕 증진 또는 환경 교육, 또는 협동사업을 위한 국민,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등 지원단체 지정, 자연체험활동 장소, 기타 환경보전 의욕의 증진에 관한 체험 기회의 장에 관한 인증 등,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찬성하였고, 2011년 5월 31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또한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이의 제기가 없이 통과 되었다. 이후 개정된 법률의 정식명칭이 「환경교육 등의 환경보전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23호 법률 제67호)로서 2011년 6월 15일에 공포되었다. 그런데 처음 의회에 제출된 법률 명칭이 어느 시점에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새로운 법률인 「환경교육등촉진법」이 개정된 이후의 연구논문인 「환경보전활동 · 환경교육추진법의 개정에 관한 고찰」(타카하시, 2011)에서, 타카하시는 개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된 것은 참의원 환경위원회에서라고 했다. 논의된 내용들중에는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 10년(DESD)」이 종료하는 2014년 이후에는 어떠한 전개를 생각하고 있는가, 에너지 교육이 환경교육에 포함될 때 ESD와 에너지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인가, 또 구법률 8조에 언급된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한 방침·계획의 작성현황과 21조 3항에 언급된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예, 21조 4항의 협정이 누구와 누구와의 협정인가, 협정내용의 정보공개에 대한 노력·의무규정의 내용 등이 논의 되었다고 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던 동북지방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열띤 논쟁이나 긴장감은 엿볼 수 없었다고 했다. 환경교육추진법 개정안이 진정성 있는 논의가 결여된 체 겨우 51분 만에 가결되었다라는 부분에서 형식적인 논의에 매우 비판적이다.

「환경교육등촉진법」의 개정된 주요내용

「환경교육등촉진법」의 새로운 법률은, 기본적으로 구법률의 조문을 수정·추가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다. 환경성의 홈페이지에 홍보되고 있는 이번 법률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환경을 축으로한 성장을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보전 활동과 행정·기업·민간단체 등의 협동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유엔『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위한 10년(ESD)』의 움직임이나,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연과의 공생철학을 살린 인간성이 풍부한 인재육성으로 연결되는 환경교육을 더욱 충실히 해야할 필요」에 의해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체험학습에 중점을 둔 활동에서 좀 더 실천적인 인재육성의 활용을 위해서 법개정이 필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법률에서는 「어디서든, 누구든지, 환경학습」이라는 슬로건으로 체험학습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새 법률은 환경교육추진법에서 발전된 형태로 실천적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충실히 하도록 법률의 명칭도 「환경교육 등의 환경보전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타카하시(2011)는 환경교육등촉진법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환경보전활동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환경교육은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환경교육추진법은 「환경교육 자체를 추진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기능이 있었던 반면에, 새법률에는 환경교육이나 ESD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동활동」을 중시」하는 것이며, 법률명칭도 이에 맞춰 변경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 개정된 법률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2조 3항에 있는 환경교육 정의부분과 여기에 새로 추가된 「협동활동」 항목이다. 구법률에서의 환경교육은 「3 이 법률에서의 〈환경교육〉이란, 환경보전에 관한 깊이있는 이해를 돋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당시 환경교육추진법이 제정되고 관련 연구자나 실천가들 사이에서 환경교육의 의미가 자연환경의 보호, 환경보전을 위한 체험학습이라는 좁은 범위의 환경

교육이라고 비판하였고, 법률이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모순된다고 평가하였다. 새로 변경된 법률에서의 정의는 「3 이 법률에서 〈환경교육〉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사회, 경제 및 문화와의 연결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돋기 위해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을 말한다.」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과 사회·경제·문화 연결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구법률이 제정된 2003년 이후의 ESD 등의 일본 국내외의 사회적 변화와 당시의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법률에는 없었던 항목으로는 「4 이 법률에 있어서의 〈협동활동〉❶이란, 국민, 민간단체 등,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각각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환경보전활동, 환경보전의 의욕의 증진, 환경교육 기타 환경의 보전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협력해야 할 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주체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파트너쉽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교육등촉진법」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번 새법률에서는 환경교육 등 지원법인 지정과 체험활동 장을 인정하는 제도와 학교교육에 있어서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지원 등이 새로 규정되어 있다.

학교교육 등에 있어서 환경교육에 관한 지원 등(제9조) 환경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구법률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새 법률에는 「유아기부터 시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제9조 2항~4항에 수정·추가 된 부분으로서 내용을 보면, 학교교육에 있어서 각 교과 그 밖의 교육활동에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를 촉진하고, 환경교육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원연수 내용의 충실성과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 자료 등 정보제공, 교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학교내 시설을 환경교육의 교재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정비와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부분이 추가 되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도 정비 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교육 안에서 환경교육의 자리는 좁은것이 현실이다. 또 중·고등부로 진학할 수록 입시준비 등으로 환경교육이 실시될 확률도 적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간편성도 되어있지 않고, 독립적인 교과도 없다. 종합 학습시간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환경교육 실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학력저하 문제로 종합학습시간 수도 줄어든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개정된 법률에는 과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강도있는 법조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성 관할 법률인 환경교육등촉진법이 문부과학성 관할인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역량과 협력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 론

새롭게 개정된 「환경교육등촉진법」은 많은 부분이 수정·추가 되었지만 초기 제정되었던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인 의무사항이나 규제사항 보다는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사항이 대부분이다. 환경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약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환경 교육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취약하다. 반면 환경 NGO/NPO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환경교육은 활성화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예산확보로 인해 교재개발, 환경교육 연수 등 리더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검토하고 개정한 이상, 법률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길 기대하며, 법률에 서도 중요시하고 있는 각 주체간의 협력으로 인해 환경 교육이 학교와 지역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2014년에는 유엔에서 채택된 ESD의 10년의 마지막 해이며 종괄적인 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참고자료

- 일본환경교육학회 페이지
<http://www.jsoee.jp/info/23/81-motivate-env-conserv.html>
- 환경성
http://www.env.go.jp/policy/suishin_ho/index.html

타카하시 마사히로(2011),

- 「환경보전활동·환경교육추진법의 개정에 관한 고찰」,
- 타이쇼우대학연구기요제 97권, 타이쇼우대학 출판
- 하야시 코우지(2011), 「환경교육법률 개정」,
- 환경교육뉴스레터 제 93, 94 합병호, 일본환경교육학회 발행
- 하야시 코우지(2003), 「환경보전활동·환경교육추진법의 성립」,
- 월간사회교육(9), 국토사 간행
- 원종빈(2008), 「한국환경교육진흥법 - 성립경위, 법조문, 특색-」,
- 환경교육 Vol.18 No.1 일본환경교육학회 발행